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집행부제출】

## 검 토 보 고 서



2025. 9.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9. .

도시환경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 발의일자: 2025. 9. 3.
- 회부일자: 2025. 9. 3.
- 검토기간: 2025. 9. 4. ~ 9. 10.(7일간)

### 2.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중인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시설명	위 치	시설규모	직원수	사업비	現 위탁현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달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두류길 141 (두류동)	지하 1, 지상 2층 (529.54㎡)	4명	273 백만원	2024. 1. 1.~ 2025. 12. 31. (2년)	모두의도시 협동조합 (대표 김현주)

####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위 탁 내 용: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신규사업 발굴 지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업효과의 지속적인 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 도시재생 자원조사, 주민의견 수렴, 모니터링, 재생사업 홍보
- 민간위탁기간: 3년(2026. 1. 1.~2028. 12. 31.)
- 위탁금액: 400백만원 정도 ※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인력: 상근 6명(센터장 1, 팀장 2, 코디네이터 3)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4. 관련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7조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재위탁 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재위탁 운영에서는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신규 현장지원센터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센터 내 현장지원팀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됨.
- 그간 센터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 참여 프로그램, 거버넌스 구축, 도시 재생사업 공모 지원 등 다양한 실적을 통해 도시재생의 인식 확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현장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 발전 방향으로 전문적이고 현장지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종합적으로, 달서구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성과와 정책자문위원회의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 적법성과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 【 관계 법령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5.23)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